

## 전기용품안전인증

##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 받고 있으면 2005년 4월 12일 받은 제조사의 정기검사 비용은 돌려 주던지 공장을 유지시켜주는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정기검사도 받은 회사를 제조공장까지 취소시켜 이후 접수시 공장검사를 신규로 받으라는것은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를 안받은 회사라면 제조사 공장을 취소하는것은 당연한일이지만 모델이 취소되었다고 공장검사를 신규로 받는것에 대하여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A** 금번 4월에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시판품 조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아 취소가 된 후 새로운 모델로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서는 신규 안전인증신청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곧 개정될 예정인 전기용품 안전인증 운용요령에서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국내에서 설치되는 에어컨에 사용되는 고무전선을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대상은 해당규격에 대하여 IEC규격(즉, VDE규격)을 취득한 H07RN-F 고무전선입니다.

이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 그리고 전선메이커에서 취득한 VDE(즉 IEC)승인문서가 있는데도 국내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다시금 어떤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안전인증 취득방법에는 어떤것이 있고 안전인증기관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또, 전선메이커에서 IEC 규격 취득시 인증받은 CB Test Certificate 같은 인증서가 있으면 별도의 국내 안전인증 취득은 면제가 되는지요?

**A** 고무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VDE (IEC 기준)의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할 때에는 국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 안전인증을 받기 위하여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IECEE/CB)를 제출하시면 국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국내 시험기준과 동일한 시험결과에 면제 하고 있습니다.